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8
----------	-------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최연숙 · 김민석 · 김용판
류호정 · 백종현 · 안철수
유의동 · 윤두현 · 이태규
정찬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요양시설·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가 우편투표 또는 기관·시설이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표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하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거소·선상투표신고)”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거소투표신고”를 “이동투표신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거소투표신고는”을 “이동투표신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소투표신고”를 “이동투표신고, 거소투표신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소투표신고에”를 “이동·거소투표신고에”로, “거소투표신고서를”을 “이동·거소투표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소투표”를 “이동투표, 거소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를 “이동투표시설 또는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를 “이동투표신고,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로, “정당한 거소투표신고”를 “정당한 이동투표신고, 거소투표신고”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를 “이동투표신고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으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를 “이동투표신고서·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이동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의 처리 및 우편요금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9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8조제6항에”를 “제38조제7항에”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각각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이동·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거소투표신고인수”를 “이동·거소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각각 “이동·거소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을 “사전투표관리관 1명, 이동투표시설마다 이동투표관리관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을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를 각각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의”로 한다.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을 “2일 동안”으로 한다.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이동투표시설의 운영)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이동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를 위한 시설(이하 “이동투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48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은 이동투표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소”는 “이동투표시설”로, “설치”는 “운영”

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동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③ 이동투표시설의 설비, 이동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④ 이동투표시설의 운영·공고·통보 및 이동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의”를 “제38조제2항의”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를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 이동투표시설의 투표함(이하 “이동투표함”이라 한다)과”로,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이동투표신고인수·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를 “불구하고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서”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를 “사전투표관리관과 이동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서”로 한다.

제1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를 “제1항 및 제2항의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投票案内文의”를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投票案内文의”를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로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선거인의 성명, 이동투표선거인명부등재번호,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154조제2항제3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사전투표기간”을 “사전·이동투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사전투표·이동투표·거소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이동투표시설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동투표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⑥ 이동투표시설의 이상유무에 관한 점검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를 “이동투표자와 거소투표자는 각각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의 규정에”로, “거소투표를”을 “이동투표와 거소투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거소투표자가”를 “이동투표자 및 거소투표자가”로, “선거인명부 또는”을 “선거인명부, 이동투표선거인명부 또는”으로 한다.

4. 사전·이동투표기간에 이동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

제158조제1항 중 “거소투표자와”를 “이동투표자, 거소투표자와”로 한다.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제158조의3 및 제158조의4로 하고,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이동투표) ① 이동투표인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제135조제2항에 따라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에 이동투표시설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시간보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이동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실을 이동투표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이동투표관리관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매일의 이동투표마감 후 또는 이동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 이동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이동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③ 이동투표의 투표용지수령 방법 및 기표절차에 관하여는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2조제2항 중 “사전투표기간”을 “사전·이동투표기간”으로 한다.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이동투표참관) ① 이동투표관리관은 이동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이동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이동투표시설별로 2명의 이동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이동투표기간 중에는 이동투표시설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이동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이동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이동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이동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이동투표참관인”으로 본다.

제163조제4항 중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를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동투표시설의”로 한다.

제164조제4항 전단 중 “사전투표소의”를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을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 및

이동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를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동투표시설에서의”로 한다.

제166조제5항 전단 중 “내외에서의”를 “및 이동투표시설 내외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투표관리관”으로”를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시설”로”로, ““사전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사무원 및 이동투표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 안에서”를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 안에서”로 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을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이동투표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 중 “제158조제6항제2호에”를 “제158조제6항제2호 및 제158조의2제2항에”로, “사전투표함을”을 “사전투표함과 이동투표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투표함을”을 “사전투표함 및 이동투표함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투표함은”을 “사전투표함 및 이동투표함은”으로 한다.

제179조제3항제3호 중 “제158조의3제3항”을 “제158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사전투표소에서”를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서”로 한다.

제201조제7항 중 “제38조제4항제1호부터”를 “제38조제5항제1호부터”로, “제158조의2에”를 “제158조의3에”로 한다.

제23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8조의3제1항을”을 각각 “제158조의4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8조의3제3항을”을 “제158조의4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8조의3제7항에”를 “제158조의4제7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8조의3제8항을”을 “제158조의4제8항을”로, “제158조의3제7항에”를 “제158조의4제7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u>거소 · 선상투표신고</u>)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 · 시 · 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 · 시 · 군이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 <u>거소투표신고</u>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u>거소투표신고</u> 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u><신 설></u>	제38조(<u>이동 · 거소 · 선상투표신고</u>) ① ----- ----- ----- ----- ----- ----- ----- ----- ----- <u>이동투표신고</u> ----- -----. <u>이동투표신고</u> 는-----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자 하는 사람은 <u>거소투표신고</u>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u>거소투표신고</u> 의 처리 및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
유

2. 3.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 6. (생략)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
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
·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
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
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
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

-----이동·거소투표신고에-----
-----이동·거소투표신고
서를-----.

1. 이동투표, 거소투표-----

2. 3. (현행과 같음)

⑤ -----
-----이동투표시설
또는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
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

1. ~ 6. (현행과 같음)

⑥ 이동투표신고,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정당한 이동투표신고, 거소투표
신고-----

---이동투표신고인명부, 거소투
표신고인명부 및-----
-----이동·거소·선상
투표신고인명부-----
-----.

⑦ -----이동·거

<u>선상투표신고인명부</u>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通을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第37條(名簿作成)第6項의 規定은 <u>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 ⑧ <u>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u>의 서식, <u>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의 서식, <u>거소투표・선상투표</u>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選舉人名簿(<u>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② ~ ⑨ (생략)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u>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 ----- ----- ----- -----. ⑧ ----- -----<u>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 -----. ⑨ <u>이동투표신고서・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u>----- ---<u>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u>이동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u>----- ----- ----- -----.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 -----<u>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u>----- -----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
--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③ (생략)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천재지변,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舉人名簿(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다시 選舉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②·③ (현행과 같음)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제38조제7항에-----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이동·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

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舉連絡所長の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 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 ⑤ (생략)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이동 ·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동
거소투표신고인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
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
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
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
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
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
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
다.

나. (생략)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
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

-----.

1. -----

가. -----

-----이동·거소투표신고인명

부-----

-----.

나. (현행과 같음)

2. -----

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 ⑭ (생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이동·거소투표신고인명부-----

-----.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

① -----

사전투표관리관 1명, 이동투표시설마다 이동투표관리관 1명을
-----.

②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은-----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
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
·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
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
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

-----투표관리관, 사전투
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의-

-----.

④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의-----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2일 동안-----

-----.

1. ~ 4.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이동투표시설의 운영)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이동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를 위한 시설(이하 “이동투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48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은 이동투표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소”는 “이동투표시설”로, “설치”는 “운영”으로,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동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③ 이동투표시설의 설비, 이동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④ 이동투표시설의 운영·공고·통보 및 이동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38조제1항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정한다.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

-----제38조제2항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 이동투표시설의 투표함(이하 “이동투표함”이라 한다)과-----

-----이동투표신고인수·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

④ · ⑤ (생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⑦ ~ ⑨ (생략)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생략)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불구하고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
서-----사전투
표관리관과 이동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
서-----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는 이동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된 선거인에게 선거인의 성명,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投票案内文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④ 投票案内文의 書式・規格 게재사항 및 郵便發送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생략)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u>이동투표선거인명부등재번호,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 -----. ④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 -----. ⑤ 투표안내문・이동투표안내문의----- ----- -----.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議決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격리자등이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된 경우

③ ~ ⑥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④ (생략)

-----.

-----.

1.・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제2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이동투표기간-----

-----.
-----.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본다.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생략)

③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⑤ 이동투표시설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동투표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⑥ 이동투표시설의 이상유무에 관한 점검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사전투표·이동투표·거소투표-----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제8항-----
-----제7항-----

-----.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투표자와 거소투표자는 각각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신설>

3의 규정에-----이동투표와 거소투표를-----.

1. ~ 3. (현행과 같음)

4. 사전·이동투표기간에 이동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

④ -----이동투표자 및 거소투표자가-----

-----선거인명부, 이동투표선거인명부 또는-----

제158조(사전투표) ① -----이동투표자, 거소투표자와-----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2(이동투표) ① 이동투표인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제135조제2항에 따라 투표안내

	<u>문에 기재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에 이동투표시설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시간보다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될 경우 이동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실을 이동투표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u> <u>② 이동투표관리관은 사전·이동투표기간 중 매일의 이동투표마감 후 또는 이동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 이동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이동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u> <u>③ 이동투표의 투표용지수령 방법 및 기표절차에 관하여는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158조의2(거소투표) (생략)</u>	<u>제158조의3(거소투표) (현행 제158조의2와 같음)</u>
<u>제158조의3(선상투표) (생략)</u>	<u>제158조의4(선상투표) (현행 제158조의3과 같음)</u>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생략)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② -----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 설>

사
전 · 이동투표기간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이동투표참관) ① 이
동투표관리관은 이동투표참관
인으로 하여금 이동투표 상황
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이동투표시설별로 2명의 이동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이동투표기간 중에는 이동투표시설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u>제2항에 따른 이동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이동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3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이동투표참관인으로 한다.</u> ④ <u>이동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이동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이동투표참관인”으로 본다.</u>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④ <u>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동투표시설의-----</u> -----.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u>	④ <u>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u>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 략)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설의-----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및 이동투표사무원”-----.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동투표시설에서의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및 이동투표시설 내외에서의-----

-----“사전투표관리관 및 이동투표시설”로--

-----“사전투표사무원 및 이동투표사무원”-----

-----“사전투표소 및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생략)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생략)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

이동투표시설 안에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이동투표관리관은-----

-----.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58조제6항제2호 및 제158조의2제2항에-----사전투표함과 이동투표함을-----

-----.

③ -----

-----사전투표함 및 이동투표함을-----

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
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
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
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
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79조(무효투표) ①·② (생
략)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
다.

1.·2. (생 략)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
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
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
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
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

④ -----
-----사전투표함 및
이동투표함-----

-----.

⑤ (현행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제158
조의4제3항-----

4.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 ⑥ (생략)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청을 하고 제158조의2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사전투표소 및 이동투표시설에서-----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38조제5항
제1호부터-----

-----제158조의3에-----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
자유방해죄 등) ① (생략)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는 행위
2. 제15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
는 행위
3. 제15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
는 행위
4. 제158조의3제7항에 따른 선
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
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
는 행위
5. 제158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
자유방해죄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제158조의4제1항을-----

2. 제158조의4제1항을-----

3. 제158조의4제3항을-----

4. 제158조의4제7항에-----

5. 제158조의4제8항을-----

•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 투표관리기록부와 <u>제158조의</u> <u>3제7항에</u>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 -----<u>제158조의4</u> <u>제7항에</u>----- ----- -----
---	---